



가축개량기술정보

社団法人 韓國家畜人工授精師協會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 축산회관내

발행인: 이재우 전화: (02)587-0629

편집인: 경기문 (02)586-9408

FAX: (02)586-9408

함께 노력합시다

회장 이재우

오곡이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을 맞아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빌며 이번 기술정보 제5호가 발행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축산발전에 노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가축개량에 열성으로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가축개량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의 보답은 분명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량은 우리 인류가 생을 누리고 존재하는 한 가축이 식량자원으로 계속 필요로 하고 필요한 만큼 이상으로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학계 및 단체, 개량기구의 협조가 예전보다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조정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태어날 수 밖에 없는 새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요,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바로 이것은 신농정의 절대적 선결과제임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 막중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UR협상의 타결에 대비하는 정부나 개량관계 기구 및 농민의 조직과 농촌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농촌실정에 비추어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투영해 봅시다.

과연 축산발전에 헌신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에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협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심각한 사태로 번지게 될 자연교배 사례의 중간 집계를 보면 아직도 개량의 인식이 부족하

고 또한 우리의 힘과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과 반감(反感)에서 오는 부작용의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꾸준한 노력으로 양축농가에게 개량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 추진하는 조사와 모든 사업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개량에 대한 소명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습니다.

저는 우리 조직의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부단히 용트림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흔히 있는 단체간 조직간의 집단이기적인 극한 상황의 행동은 절대 삼가해야 하며 조사, 연구, 분석을 통한 건의로 건설적이고도 순리에 따르는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어둠의 알 속에서 햇빛을 보려면 모진 고통을 이기고 깨어져야 하듯 우리들 역시 어렵고 시련의 시간들을 견디어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일선 개량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의식을 달리한 건설적인 봉사정신과 가축개량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집념이 있을 때 축산부국의 꿈은 한결 앞당겨지리라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과 희망있는 협회의 조직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신선하고 의기에 찬 순간입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협회 소식

경기남부지회 결성

일 시 : 1993년 8월 18일 12:00

장 소 : 용인 송문가든

참석인원 : 각지부 대표 30명 참석

내 용 : 경기남부지회 결성

- * 지회장 : 권순철
- * 부회장 : 방만호, 광성영
- * 감 사 : 김병선, 심원택
- * 사무장 : 진용선
- * 남부지역 조직 활성화를 위한 토의가 있었음.

천안지부 단합대회

일 시 : 1993년 9월 10일 11:00

장 소 : 복면, 연출리 체육공원

참석인원 : 25명

내 용 : 교육 및 단합 체육대회

강원도 교육 및 체육대회

일 시 : 1993년 9월 18일~19일(1박2일)

장 소 : 횡성군 공근면 공명분교 운동장

참석인원 : 강원도 회원가족 100여명

내 용 : 교육

단합체육대회

전북 지부장회의

일 시 : 1993년 9월 21일 12:00

장 소 : 전주 벽계가든

참석인원 : 14명(임원, 지부장)

내 용 : 축산인 체육대회

학술대회

자연교배 및 자가수정 문제점 토의

한우개량사업소 방문

일 시 : 1993년 9월 22일

* 회장 인사차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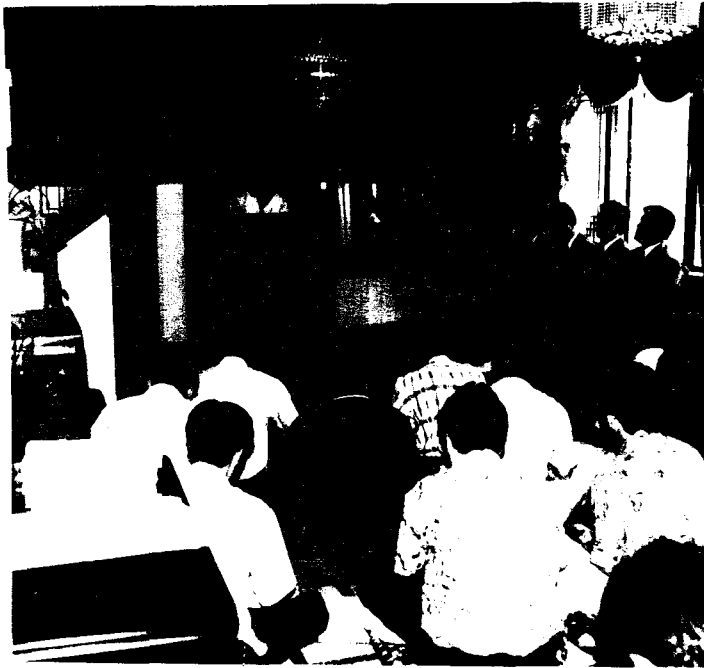
신제품 융해기 소개

특 징

- 용기의 부식을 막기 위하여 강화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작고 견고하기 때문에 휴대 및 부착이 용이하다.
- 온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독일제 온도센서를 사용함.
- 보온이 잘되어 전력소모가 극히 적어 밧데리 부담이 없으며, 40℃까지 필요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 정액을 융해하기 적합하게 제작되어 최대한 간편, 정확하게 융해되기 때문에 정충활력과 수태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함.

사 용 방 법

- 용기에 물을 넣고 자동차 라이트프러그에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정액 융해적은 유지



국립 종축원 방문

일시 : 1993년 8월 19일

* 회장 인사차 방문

강원도 지부장 회의

일 시 : 1993년 8월 26일 20:00

장 소 : 횡성 아리랑 가든

참석인원 : 지부대표 30명

내 용 : * 조직의 활성화 방안

- * 체육대회 및 교육실시 계획 결정
- * 회비 지출문제 협의

개량업계 소식

93 한국 양계 박람회

일 시 : 1993년 8월 20일 13:00
 장 소 : 한국종합전시장 국제회의장
 내 용 : 양계산업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
 기자재전시, 닭, 계란전시 및 생산물 전시판매

한우연구회 세미나

일 시 : 1993년 9월 9일 10:00
 장 소 : 축산 시험장
 내 용 : 한우산업의 정책방향
 고급육 생산 기술 개발
 등급제를 고려하지 않은 한우육 판매분석
 결과

낙농심포지움

일 시 : 1993년 9월 10일 10:00
 장 소 : 축협중앙회 강당
 내 용 : • 고능력 젖소 사양에 맞는 시설 및 관리의 발전방향
 • 전업형 낙농우사의 활용과 개선방향
 • 낙농조사료 생산과 이용체계의 생력화 방안
 • 낙농여건별 분포 처리 방식과 생력화 방안
 • 낙농의 국제화에 따른 유지향상과 관리대책
 • 가족 노력형 전업낙농 규모 설정과 경영구상

한일 생명공학이용 고능력 가축생산 심포지움

일 시 : 1993년 9월 17일 10:00
 장 소 : 축산시험장
 내 용 : 일본의 수정란 이식 현황과 연구방향
 돼지 체외 수정과 핵이식
 소의 체외 수정
 일본에 있어서 과배란 처리 및 동결보존 기술에 관한 연구
 돼지 수정란의 동결보존 기술확립을 위한 전략
 소의 핵이식 기술의 현황과 전망

한우 고등등록우 탄생

일 시 : 1993년 9월 20일~25일. 심사
 장 소 : 충북오창, 충남이인 개량단지
 내 용 : 고등등록우 오창 15두, 이인 1두 계 16두
 고등등록우는 한우 등록 단계중 최상위 등록우로서 이의 탄생은 체계적인 한우개량 기반이 되는 혈통체계 확립과 우수종축의 확보라는 측면의 유전적인 개량에 의한 한우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터전을 확보했다.

협회 기자재취급 안내

• 기자재

품명	규격	단가	비고
주입기	국산	13,000	
	불란서재	23,000	
캡	1000개	60,000	
장갑	100개	3,500	
콘테이너	각종	시가	
용해기	셀트	70,000	

기타 회원이 필요한 물품
 정액을 공급하는 순회차량이 기자재를 준비하고 다님.

구입방법

- 협회에 연락
 - 순회공급차에서 구입
 - 협회구입시 온라인 입금후 연락
- 온라인구좌 : 농협
 087-01-080273
 수정사 협회

새로 改正된 畜産法

(실무에 관련이 적은 조항은 삭제함)
(전호(제4호)에서 계속)

第33條(屠畜의 제한과 금지) ①農林水産部長官 은 家畜의 보호·육성과 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性別·年齡 및 移用目的에 따라 家畜의 屠殺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家畜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學術試驗用으로 필요한 家畜
2. 動物用醫藥品의 製造用으로 필요한 家畜으로서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은 家畜
3. 負傷·難産 또는 產褥麻痺가 된 家畜이나 創傷性 心囊炎 또는 急性鼓脹症등의 病에 걸린 家畜으로서 獸醫師의 診斷에 의하여 治療의 可望이 없다고 인정된 家畜
4. 不妊·畸形등으로 인하여 獸醫師의 診斷에 의하여 利用價値가 없다고 인정된 家畜

第2節 價格安定

第34條(畜産物의 安定價格의 決定·告示) ①農林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畜産物(이하 “指定畜産物”이라 한다)의 價格을 安定시키기 위하여 安定上限價格과 安定下限價格을 매년 3月 1日까지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告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定上限價格과 安定下限價格은 指定 畜産物을 生産하는 家畜의 產地價格騰落週期등을 기초로 한 일정기간의 農家販賣價格·生産費·價格騰落幅을 基準으로 하고, 再生産 및 安定적 消費側面등을 參照하여 定하여야 한다.

第35條(價格安定措置) ①農林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第12條 및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部類都賣市場 및 畜産部類共販場(이하 각각 “都賣市場” 및 “共販場”이라 한다)에서 指定畜産物의 價格이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安定上限價格과 安定下限價格의 범위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收買·備蓄·放出 등 필요한 措置를 强구하여야 한다.

②農林水産部長官 은 指定畜産物의 價格이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安定下限價格이하로 下落하거나 下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확보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 당해 畜産物의 收買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買資金을 지원받고자 하는 者는 收買기간·收買場所·收買畜産物의 備蓄 및 販賣등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여 農林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4章 畜産物 등의 流通

第1節 家畜市場

第36조條(家畜市場의 開設등) ①家畜市場은 畜産業協同組合이 開設·관리한다.

②畜産業協同組合은 家畜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市場業務規定을 定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家畜市場의 開設許可를 받은 畜産業協同組合(이하 “市場開設者”라 한다)은 家畜市場을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市場開設者는 家畜市場의 운영에 필요한 施設로서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施設을 設置·유지하여야 한다.

⑤市·道知事는 家畜의 원활한 需給과 去來를 위하여 家畜市場의 開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이 있는 때에는 그 地域을 管轄하는 畜産業協同組合에 대하여 家畜市場의 開設을 권고할 수 있다.

⑥市場開設者는 家畜市場業務規定과 家畜市場의 位置 및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施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37條(家畜市場에서의 去來家畜) ①家畜市場에서 去來하는 家畜의 종류는 農林水産部令으로 定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은 家畜市場밖에서 이를 去來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家畜市場 밖에서 家畜을 거래할 수 있다.

第38條(家畜의 去來方法) 家畜市場에서의 家畜의 去來는 競賣 또는 仲介의 方法에 의한다.

第39條(談合行爲의 금지등) ①家畜市場에서 家畜을 去來하는 者는 公정한 價格의 成立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目的으로 談合하거나 家畜에 대하여 불합리한 給養 또는 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市場開設者는 家畜市場의 秩序를 유지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40條(家畜賣買手數料) ①家畜市場에서 家畜의 賣買가 成立된 때에는 家畜의 買受人은 당해 賣買價格의 100分の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長이 定하는 家畜賣買手數料를

市場開設者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市場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賣買手 數料收入을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家畜의 개량·増殖·防疫 및 家畜共濟
2. 家畜市場의 운영
3. 家畜市場의 施設 및 去來制度의 개선

第41條(家畜市場의 監督) ①市長·郡守·區廳長은 家畜市場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家畜市場의 設置·構造·設備 또는 家畜市場業務規定의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市場開設者에 대하여 家畜市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施設의 개선 및 整備를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과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第25條第2項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42條(家畜市場 開設許可의 取消 등) 市長·郡守·區廳長은 市場開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家畜市場의 開設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家畜市場의 開場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第3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2. 第36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家畜市場業務規定·家畜市場의 位置 또는 施設을 변경한 때
3.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比率를 초과하여 家畜賣買手數料를 징수한 때

第2節 畜産物의 等級化 去來

第43條(等級化의 促進) ①農林水産部長官은 畜産物의 品質向上과 流通의 원활 및 家畜改良의 촉진을 위하여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等級判定을 받은 畜産物에 한하여 去來하게 할 수 있다.

②農林水産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等級判定을 받은 畜産物을 去來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去來地域, 畜産物의 종류·形態 및 施行時期 등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地域으로 告示되는 地域(이하 “告示地域”이라 한다)안에 있는 都賣市場의 指定 都賣人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上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判定을 받아야 할 畜産物을 告示地域안으로 搬入하고자 하는 者는 畜産物衛生處理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屠畜場(이하 “屠畜場”이라 한다)으로서 당해 畜産物의 生産을 위하여 家畜을 屠殺한 屠畜場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判定을 받아야 한다.

⑤農林水産部長官은 等級判定을 받은 畜産物의 去來促進을 위하여 屠畜場과 食品衛生法 第22條第5

項의 規定에 의한 食肉販賣業所의 施設改善을 지원하거나 販賣方法 등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指導를 할 수 있다.

第44條(畜産物의 等級判定) ①農林水産部長官은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의 等級判定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하여금 等級判定業務를 총괄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의 等級判定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畜産物等級判定士(이하 “等級判定士”라 한다)를 둔다.

③等級判定士의 自格要件에 관한 사항은 農林水産部令으로 정하고, 任免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農林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가 이를 정한다.

④農林水産部長官은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에 대하여 等級判定등에 소요되는 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第45條(等級判定士의 業務) ①等級判定士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畜産物의 等級判定 및 그 결과의 記錄·보관
2. 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3. 等級判定 關係設備의 點檢·관리
4. 기타 等級判定業務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누구든지 等級判定士가 수행하는 等級判定業務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章 家畜共濟

第51條(權利·義務의 承繼) ①特殊家畜共濟에 加入된 家畜의 讓受人은 家畜共濟團體의 승인을 얻어 讓渡人에 속하였던 家畜共濟에 관한 모든 權利·義務를 承繼할 수 있다.

②家畜共濟團體는 정당한 이유 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2條(家畜共濟團體의 監督) ①農林水産部長官은 家畜共濟團體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家畜共濟團體의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②農林水産部長官은 家畜共濟團體에 대하여 家畜共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第25條第2項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7章 補 則

第59條(手數料) 第16條第1項·第19條第1項·第21條第2項·第26條第1項 및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登錄·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의 等級判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60條(聽聞) 農林水産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

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所在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授精師의 免許取消 또는 業務停止
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精液等處理業의 許可取消 또는 營業停止
3.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授精所의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種畜業者 또는 登錄·許可畜產業者에 대한 減縮命令 및 超過飼育賦課金の 納付命令
5. 第3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孵化業 등의 登錄·許可取消 또는 營業停止
6.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家畜市場의 開設許可取消 또는 開場停止

第61條(權限의 委任·委託) ①이 法에 의한 農林水産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814條10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種畜 등의 輸出入 추천에 관한 農林水産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畜産關係法人 또는 畜産關係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④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授精師에 대한 교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畜産關係法人 또는 畜産關係團體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第8章 罰 則

第6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精液等處理業을 영위한 者
2.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를 받아야 할 畜産業을 영위한 者
3.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企業으로서 登錄·許可畜産業을 영위한 者
4. 第2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上限線을 초과하여 畜産業을 영위한 者

第6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孵化業 또는 種畜業을 영위한 者
2.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하여야 할 畜産業을 영위한 者
3.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4.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孵化業者·種畜業者 또는 登錄·許可畜產業者
5.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屠殺이 제한 또는 금지된 家畜을 屠殺한 者
6.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畜産業協同組合이 아닌 者로서 家畜市場을 開設한 者
7. 第4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告示地域 안에서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거래한 者
8.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 上場한 者
9. 第43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告示地域 안으로 搬入한 者
10.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士의 業務遂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64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保護地域 안에서 家畜傳染病을 發生 또는 傳播시킬 우려가 있는 家畜 기타 짐승을 飼育한 者
2. 第15條 規定에 위반하여 授精師가 아닌 者로서 精液을 採取·처리하거나 이를 암家畜에 注入한 者
3.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授精所를 開設한 者
4. 第21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液等處理業者가 生産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 취급한 者
5.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 家畜人工授精용으로 供給·注入하거나 이를 암家畜에 移植한 者
6.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家畜市場 內에서 家畜을 거래한 者

第65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2條 내지 第6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各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66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8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 또는 營業의 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2. 第19條第3項 또는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25條第1項, 第41條第1項·第2項 또는 第5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5. 第26條第3項 및 第2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를 한 種畜業者 또는 登錄·許可畜產業者

- 6. 第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登錄 또는 許可事項을 변경한 者
- 7.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繼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 8.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다만, 第63條第5項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
- 9.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10. 第55條第1項·第2項 또는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納入金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태만히 한 者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이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義를 제기할 수 있다.
-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義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義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 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 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 2條(精液等處理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 당시 種畜으로부터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 採取·처리하여 販賣하는 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는 이 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人力을 갖추어 農林水產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第 3條(孵化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孵化業者는 이 법에 의하여 登錄을 한 孵化業者로 본다.
- 第 4條(畜産進興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 당시의 畜産進興基金은 이 법에 의한 畜産發展基金으로 본다.
- 第 5條(行政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免許·許可(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登錄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第 6條(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酪農進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 중 “畜産法 第36條”를 “畜産法 第47條”로 한다.
②草地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本文 중 “畜産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進興基金”을 “畜産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發展基金”으로 한다.
③畜産業協同組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3條第1項第15號中 “畜産進興基金”을 “畜産發展基金”으로 한다.
④이 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畜産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법의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업계소개

한국생명과학연구소

주 소 : 서울 종로구 혜화동 53-9(우편110-530)
 전 화 : (02)762-5076 FAX : (02)764-5076
 대 표 자 : 농학박사 정구민
 주요업무 : 연구 및 교육
 연구 : 체외수정, 수정란 이식
 교육 : 수정사, 수의사, 낙농가, 전문대, 대학(원)생
 축산분야 종사자에 수정란 이식 및 번식에 대한 교육

교육내용

기초반

- 소 수정란이식 기초교육(I)
- 수정란 이식의 이론

중급반

- 수정란의 체외취급과 조작
- 소 수정란이식 기초교육(II)
- 수정란의 동결과 융해
- 돼지 인공수정 기초교육
- 인공수정의 문제점
- 정자의 회석 보존
- 산자수 증진 방법

전문반

- Human IVF Laboratory orientation
- Laboratory set-up
- Effective management
- Culture system

※교육에 대한 문의는 협회나 연구소로 문의바람.

가축인공수정사업은 축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사무국장 경 기 문

새끼를 낳지 않고 알을 낳지 않는 축산은 있을 수 없다. 계란, 고기와 같은 축산물은 가축이 종족을 유지시키려는 번식본능에서 생겨나는 산물이고 증식된 가축 자체를 이용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번식기술 중 현재 가장 효과적이고 편리한 방법은 인공수정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방법으로 가축을 번식시키고 수정란 이식, 체외수정, 핵이식, 유전자 조작 등 첨단기술도 인공수정을 기초로 발달된 기술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수정은 연구역사는 오래지만 실제 축산에 이용된 것은 30여년 정도로 보아야 한다. 짧은 역사지만 보급율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초창기에 기술보급과 교육에 애쓰신 분의 노고와 개척자 정신으로 업무를 시작한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컸던 때문으로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축산 상황이 인공수정을 보급하기에 적합한 사육규모도 발전원인으로 볼수가 있다.

초창기에 시작된 젖소 인공수정을 보면 사육규모가 2~10두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종모우를 기를 형편이 못되어 인공수정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돼지도 부엌찌꺼기 및 농가 부산물로 한두마리 기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따로 숫돼지를 길러 종부에 이용하기가 어렵고 숫돼지 있는 곳까지 이동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인공수정이 많이 이용되었다.

제일 늦게 시작된 한우 인공수정은 사육규모가 1~2두 정도로 숫소를 따로 기를 수 없지만 군청에서 임대했던 종모우를 이용하여 교미시키고 한우 인공수정은 일반인식이 덜되어 인공수정을 하면 소를 버리느니, 수태가 잘 안된다 하여 보급이 늦었다.

한우 인공수정을 처음 시작할 때 동네 사랑방을 찾아 다니며, 인공수정 할것을 부탁하고 무료로 해주며 지도계몽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얼마후, 한번 송아지가 나면 송아지가 좋고 편한것을 안 후 택시를 가지고 와서 인공수정을 부탁하는 농민도 많았었다.

그후 군청에서 종모우를 처분하고 인공수정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자 급격히 늘어 거의 전두수가 인공수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인공수정은 기술보급 노력과 축산 여건이 맞아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인공수정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인공수정은 물론 가축개량도 큰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문제점은 알아보면, 자연교미가 늘어나는 문제이다. 돼지는 부업에서 전업, 기업양돈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정액보관, 운반의 불편, 정액의 동결상 문제점 때문에 종돈을 이용하기 시작하여 현재 인공수정은 일부 양돈장에서 조금하는 정도이다.

한우에서는 암놈의 사육규모가 1~2두에서 10~30두로 많아지며 기르는 형태가 운동장에 여러마리 놓아기르고 그 안에 숫소를 넣어두어 자연종부 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동네에서 스티카를 붙이면서 영업적으로 자연종부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 최근 조사에 의하면 자연종부가 일부 지역에서는 30%정도, 그 이상 되는 지역도 있다.

젖소 또한 일부 개량의식이 없는 양축가가 운동장에 숫소를 넣어 이용하고 육성우는 기르는 목장에서 많으며 이 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며 늘어가 는 추세이다.

이렇게 생산된 송아지는 여러면에서 좋지않고 어린 암소가 임신되어 모체와 송아지의 성장발육이 늦고 능력을 발휘하는데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송아지를 생산한 사람이 기르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팔아 산 사람만 손해를 보며 가축개량산업의 퇴보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자연교미가 성행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장래 소값의 불안정 때문에 한마리라도 일찍 송아지를 낳아 팔겠다는 심리와 소 매매시에 임신관계가 가격형성의 요인이 되고 임신된 송아지 개월수로 매매되기 때문이며 인공수정은 자연교미보다 수태가 잘 안된다는 잘못된 생각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일부수정사 문제이다. 대부분 수정사들은 업무에 충실하고 신뢰받는 전문기술자로 일하고 있지만 수정료의 과다요구, 적기수정 불이행, 정액선정 등 개량정보 제공의 불충분으로 일부수정사들이 양축가와 마찰을 일으키는 곳이 있다. 또, 수정사의 자질부족으로 수태율이 떨어지고 번식장해우가 많이 발생되어 인공수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기피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것은 가축개량과 인공수정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된다.

가축개량은 어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과 경제적인 투자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러한 반면에 조그만 시행착오가 생겨도 오랫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기 쉬운 어려운 사업이다.

그렇지만 개량의 성과는 생산성을 높여 엄청난 수익의 고부가가치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도계몽을 통하여 양축농가에 알려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가축개량과 인공수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겠다.

다음은 자가인공수정의 문제이다. 인공수정의 기술은 여러 학문(번식생리학, 해부학, 병리학, 영양학, 세균학, 미생물학, 위생학등)을 기초로 많은 경험이 필요한 기술이나. 암놈에게 정액을 넣어주는 간단한 작업으로 착각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면 어 느 것이든 자기 손으로 해보겠다는 양축가의 순수한 의욕과 겹쳐서 축산법의 예외조항(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데 단, 자기 가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이용, 확산시키려 애쓰는 예가 있고 전문기술자로서의 수정사 역할을 실추시키며 농가를 교육시킨다는 명목아래 간단한 교육으로 자가수정을 유도하는 기관 및 상사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얼마간의 수정료를 아끼려고 바쁜중에 교육을 받으러 다녀야 하고 기구준비에 필요한 비용이 간단히 준비한다해도 100여만 원이 들며 시간낭비 등 계산해 볼때 경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액의 취급 관리에 어려운 점과 기술부족의 부작용이 제일 심각한 문제이다.

가축의 발정상태는 천차만별이며 확실히 판단하기에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생식기는 조직이 약하고 세밀하여 서투른 시술은 수태율 저하와 불임우를 만들기 때문이다.

필자도 20여년 수정을 했지만 지금도 일주일정도 쉬고 수정하면 손끝의 감각이 다를 정도로 예민한 기술인 것이다.

외국같이 100두에서 1,000두 사육규모는 2~3개 목장이 합쳐 한수정사를 둔다든지 자가수정은 하는예가 있으나 10두에서 50두 규모의 사육자가 이것을 모방한다는 것은 잘못이며 규모에 맞는 경영관리방법이 필요하다.

축산에서 번식문제는 경영의 흑자와 적자의 지표이다. 수태율 저하는 양축가 개인의 손해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이다.

한우에서는 한주기 넘길때 13만원정도 젖소에서는 송아지 값, 유량감소 20만원정도 손해를 보게되는데 예를 들면 가임암소가 35만두이고 한번 수태율이 10% 떨어진다면 전국적으로 70억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다.

숙련된 기술만이 수태율을 높일 수 있으며 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축가는 자가인공수정 보다는 사양관리면에서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연구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 번식율을 높이는 것이 경영상 유리한 것이다.

양축가가 사양관리면에서 해야 할 일은 세심한 관찰과 철저한 기록이며, 첫째 발정발견이다.

발정이 온 것을 발견해야 수정을 시킬 수 있다면 그냥 지나가면 수정을 못시키고 다음에 발정이 안오면 더 큰 손해이다.

또 발정시간, 상태, 이상유무를 관찰하지 못하면 수태율이 떨어지고 번식장해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영양관리이다.

수태율과 영양은 비례한다. B.C.S(몸영양상태지수)가 너무

마르거나 비만은 수태율 저하와 번식장해의 원인이며 임신지속, 분만 및 이유에도 큰 영향이 미치고 건유기 영양관리 분만시 위생처리 및 산육기 영양관리가 얼마나 정상적인 상태인가가 수태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과 적합한 사양관리가 중요하다.

세째, 철저한 기록이다.

기록 없이는 번식관리와 개량이 불가능하다. 수정일시, 종모우명, 발정상태, 임신감정, 분만내용, 치료사항을 자세히 기록하며 이것을 토대로 수태율, 번식율, 분만간격, 공태일수, 착유일수등을 파악하며 우군번식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성적이 나쁘면 목표를 설정 개선방법을 찾아 연구해야 한다.

건유기사양관리, 분만위생처리 및 산육기 관리가 얼마나 정상적인 관리를 했느냐에 큰 영향이 있다.

기타 축군능력을 분석파악, 알맞은 관리방법을 찾아야 하고 결점을 보완하고,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정액의 선별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정액을 수정사와 의논하여 안정적 확보 및 번식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또 번식장해가 발생되면 수정사, 수의사와 같이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우고 관리개선하여 수태율을 높이고 불임우로 도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수정사나 양축가는 자기분야를 열심히하며 상호보완적 공조체계와 사업의 동반자로 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제도이다.

현재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발급받은 사람은 전국에 약 15,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그중 1,600명이 수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중 약 300여명은 축협소속이고 나머지는 민간개업수정사이며 업무량으로 보면 축협이 약 13%, 민간수정소가 약 78%를 하고 있다.

수정업무조직이 이원화체제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조직간 많은 불만이 생겨나고 있다.

축협인공수정사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민간수정소사업 여건을 어렵게 하고 있다.

축협은 업무의 수입과 보조금으로 수정료를 싸게 받기 때문에 민간수정사는 양축농민에게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인식시켜 신뢰를 떨어뜨리고 업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민간수정사는 수정료 수입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노후대책을 생각해야되기 때문에 민간수정소가 축협수정료를 받으며 정상적으로 수정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민간에 일임하든지 축협에서 다하든지 일원화시켜 인공수정사업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수정소의 난립현상이다. 현행 축산법은 수정을 한번 시켜 보지 않았어도 면허만 있으면 개업할 수 있다. 그들은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대상은 농가의 소이다. 남의 귀중한 재산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이 적기 때문에 수정료를 싸게해준다고 축주를 현혹하여 기존 질서를 문란시키며 서투른 시술로 수태율저하는 물론 번식 장해우를 만들기도 하며 너무 어린 술 수정시켜준다든지 심지어 발정이 오지 않은

소에게도 수정시키는 때가 있다.

이로 인하여 송아지 한마리 얻자고 일년동안 고생해서 기른 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송아지도 못낳고 불임우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정료 몇천원 싸게 한다는 것이 큰 손해를 보는 농민이 많으며 성실히 일해온 기존 수정사의 사업을 저해하고 인공수정사업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이웃 일본은 50세가 넘는 수정사가 많고 노령까지 일을 하는데 민간 인공수정사업은 고도의 숙련기술자들이 수정만으로 사업이 힘들어 부업을 갖는단든지 전업하는 예도 있어 안타까우며 인공수정기술발달에 큰 저해요인으로 꼭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그러니 최근 일어나는 문제점은 인공수정 발전 저해는 물론 자연교미, 자가수정은 인공수정 실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축의 생산과 사육두수 파악을 어렵게 만들어 정책의 기초인 가축통계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앞으로 인공수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축가에게 가축의 번식개량에 인공수정방법의 좋은 점을 알리고 이 방법은 전문기술임을 인식시켜 자가수정과 같이 인공수정 기술발전 저해시키는 방법을 지양하고 가축개량을 저해하는 자연교미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안장치가 필요하고 수정은 수정사에게 양축가는 사양관리에서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며, 오랜동안 경험과 숙련된 기술자인 성실한 민간수정사들이 가축개량의 역군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안이 있어야겠다.

(이 원고는 축산신문 농정춘추에 기고한 내용을 발췌기록한 것임)

협회 및 업계 행사 안내

남부지역 활성화 협의회

일 시 : 1993년 10월 12일 20 : 00
장 소 : 대구
내 용 : 남부 경남·북, 전남·북지역 협회 조직활성화 협의

축산인 체육대회

일 시 : 1993년 10월 16일 08 : 30
장 소 : 농업진흥공사 운동장
내 용 : 축산관련 단체 친목 체육대회
주 최 : 축산신문사

제1회 한우능력 평가대회 및 한우고기 판매전

일 시 : 1993년 10월 18일~23일
장 소 : 축협 가락동 서울공판장
축협 성내동 판매장
내 용 : 도체판정 및 심사, 평가
한우고기 시식회
주 최 : 축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 공동

제5회 고능력우 경매대회

일 시 : 1993년 10월 27일~28일
장 소 : 수원 가축시장
내 용 : 10월 27일 심사, 28일 경매
고능력우 경매, 축산 기자재 전시판매 등
주 최 : 한국종축개량협회

수정란이식연구회 추계 학술대회

일 시 : 1993년 10월 30일 09 : 00
장 소 : 국립 종축원
내 용 : 학술발표회 및 워크샵
주 최 : 한국수정란이식협회

제2회 협회 학술대회

일 시 : 1993년 11월 초순
장 소 : 차후 확정
내 용 : 특안 수정란 이식 현황
성호르몬이 수태에 미치는 영향
주 최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제 5 회



고능력젖소평가 및 경매행사

혈통 · 외모 · 능력 평가에 의한

우수한 젖소 마련의 가장 좋은 기회

경매대상 : 육성우 45두

초임우 23두

※ 부대행사 : 경산우 품평대회(약30두)



때 : 1993. 10. 27~28

27일-평가 및 세미나

28일-경매

곳 : 수원 가축시장

주최 : 한국중축개량협회

주관 : 한국낙농경영협의회

후원 : 농림수산부 · 축협중앙회 · 한국낙농육우협회

협찬 : 축산신문사 · 농수축산신문사 · 한국농어민신문사

저축과 보장

직장인 보장 보험

— 협회에서 추천하는 보험 —

저렴한 보험료

-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과는 달리 단체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가입연령 만15~65세까지 월보험료가 동일하며 보험금이 1억원까지 무제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과 달리 보험료의 상한선은 48,800원입니다.
- 보험 가입후 보험료 불입은 지로, 자동이체 등 개별입금됩니다.

고액의 보험금 보장

- 시간·장소에 관계 없이 24시간 어떤 재해사고에도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특히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장의 범위가 대단히 큼니다.(산재보험 및 기타 보험에 관계 없이 별도 지급)

10년 만기가입예시

지급사유	남 자			여 자	
	20,400원	30,400원	48,800원	15,400원	21,000원
월 보 험 료	20,400원	30,400원	48,800원	15,400원	21,000원
교통재해사망시	4,132만원	6,198만원	1억원	7,281만원	1억원
재해사망시	2,479만원	3,719만원	6,000만원	4,368만원	6,000만원
재해장애 2급~6급	579~83만원	868~124만원	1,400~200만원	1,019~145만원	1,400~200만원
질병사망시	826만원	1,239만원	2,000만원	1,456만원	2,000만원
만 기 시	납입보험료 전액 + 확정배당금 + 이익배당금 + 장기유지 특별 배당금				
재해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0,000원 지급				

※ 2~3급 재해장애시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타보험과의 비교

	개인보험 (무지개보험)	단체보험 (직장인보장보험)	손해보험 (운전자복지보험)
연 령	연령에 비례 보험료 체증	연령에 무관하게 동일 보험료	연령에 무관하게 동일 보험료
기 간	10년	10년	5년
월 보 험 료	83,432원	48,400원	90,920원
교통재해사망시	1억원	1억원	5천만원
재해사망시	1억원	6천만원	5천만원
재해 2급~6급	585~84만원	14백만~2백만	재해종류에 따라 사정지급

	개인보험 (무지개보험)	단체보험 (직장인보장보험)	손해보험 (운전자복지보험)
일반사망시	1670만원	2천만원	없음
건강진단	有	無	無
운 전 자	가입안됨	무관함	무관함
만 기 시	납입보험료	납입보험료 배당금	납입보험료中 일부손실 (6,000원/月)
기 타		삼성생명 고객으로 각종 서비스 제공	

상담전화 (02) 311-4275.4276.4277, 773-4118 담당자: 이 강 민

SAMSUNG

삼성생명

三星生命保險株式會社



社 團 韓 國 家 畜 工 授 精 師 協 會
法 人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1516-5 축산회관內
TEL : (02) 586-9408 FAX : (02) 586-9408

137-073

□□□ - □□□□